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은 2007년 4월 2일 이후 신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1조(총칙)

- ①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부터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중 저연령자의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의 가입)

- ① 보험계약자는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신체관련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계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가입대상자)

- ①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가입대상자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2. 본인의 배우자(가입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최초 계약시 제1항의 가입대상자 중 본인만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배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가입대상자로 합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의 호적상 부모
 4.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제4조(대표 계약자의 지정)

- ①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④ 위 ①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은 대표계약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의하여 3년 자동갱신 되는 보장보험료는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련 담보의 경우 연령증가와 의료비상승률에 연동되어 갱신시점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기간
2. 납입보험료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배우자가 추가되는 경우 위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의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이 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전부에 대하여 회사의 제1항의 보상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소멸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이 계약에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나이의 계산)

-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 나이로 계산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납입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 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 ① 이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이 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수익자의 지정)

- ①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

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급적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울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2.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각의 상해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사망보험금),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상해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위의 제1항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

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애지급률이 사고일 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 교통상해 사망·후유장애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 제5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다. 자동차 및 교통수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 제5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수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5.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50% 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시점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6.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7. 상해 입원일당 담보(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8. 뇌·내장손상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뇌·내장손상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1】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脾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1】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 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 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 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 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 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 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 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요관 및 방광 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도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내장손상 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9.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시점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0.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상해등급에 따라 【별표-상해2】에 정한 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1.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비운전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상해등급에 따라【별표-상해2】에 정한 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라.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각의 질병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질병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도 전향과 같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보장의 시기 및 중기)를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2.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10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질병1】 '질병 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 '질병 고도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질병 고도장해라 함은 【별표-질병1】 '질병 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질병1】 '질병 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11.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발병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단, 신장장애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 발병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의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상병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3.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4. 질병 입원일당 담보(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5. 뇌출혈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정한 금액을 뇌출혈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뇌출혈」로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전액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2】(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6. 뇌출혈 진단비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뇌출혈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

병2】(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7.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정한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전액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9.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9.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7조(암진단비)에서 정한 암진단비 중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

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암진단비)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보장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암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전액
기타피부암 진단시 갑상샘암 진단시 상피내암 진단시 경계성종양 진단시	가입금액의 5%	가입금액의 10%

- ② 피보험자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후 진단받은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10. 암진단비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6조(암진단비)에서 정한 암진단비 중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암진단비)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암 진단시	가입금액의 전액
기타피부암 진단시 갑상샘암 진단시 상피내암 진단시 경계성종양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 ② 피보험자가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후 진단받은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11. 암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

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7조(암입원일당)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입원일당
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의 20%

- ②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일당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12. 암입원일당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6조(암입원일당)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입원일당
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부터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의 20%

- ②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

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일당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13.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 「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 또는 최종 발병일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의료비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 및 제4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4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성병

1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질병7】에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

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4. 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이하 「상해」라 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외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이하 「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

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 또는 최종 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원의료비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성병
1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3.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약제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질병7】에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5. 질병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 「질병 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발병일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 입원의료비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성병
1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질병7】에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6. 질병 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이하 「질병 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질병 통원의료비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성병
 1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질병7】에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7. 질병 가족생활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가족생활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질병 가족생활지원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시점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4.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별로 각각의 재물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2항의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재물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을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0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의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의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의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를 적용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화재손해」라 합니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 「붕괴 등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③ 제1항의 「화재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④ 위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및 수송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 ① 이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㉕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 ㉖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주택으로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함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㉗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점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경우
 -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공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 및 붕괴 등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 또는 폭발, 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5.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
 10.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5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5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 _____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에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조(임시주거비용)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화재손해 및 붕괴 등의 손해를 입고 제5조(지급보험금)에 따라 결정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의 10% 해당액을 임시주거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임시주거비용은 1사고당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화재손해 또는 붕괴 등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화재 및 붕괴 손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또한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1. 특수건물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제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특별약관 4-1.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제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제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제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제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사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특별약관 4-1.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담보 특별약관 및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2. 신체손해 배상책임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②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 ③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 고의·중과실·법령위반으로 발생한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 시행 규칙 제2조(【별표-재물1】참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6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 3.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특별약관 4-1.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담보 특별약관 및 채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2-가.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 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 후 보험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1. 보험가입금액의 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4-2. 도난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물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하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한합니다.
 1. 가재.
 2. 아래의 물건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 ㄱ.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ㄴ.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 ② 아래의 물건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사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3.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4.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5.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6.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7.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도난손해 보험금)

-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도난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보험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보험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에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2-1. 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위로금)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특별약관 4-2. 도난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물건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도난손해가 발생하여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특별약관 4-2. 도난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4조(도난손해 보험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0만원을 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 및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특별약관 4-2. 도난손해 담보 특별약관 및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기명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하여 각각의 배상책임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을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의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를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1. 가족 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
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2. 임차자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기명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기명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임차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

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7.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목적에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생긴 손해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증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또는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 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쏘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 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 ①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을 목적인 임차물건의 시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목적인 임차건물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의 부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단, 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각각의 비용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발생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용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를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1. 벌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2.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

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한 경우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2,000만원을 타인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비용1】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 8은 제외합니다.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 70일, 140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피해자 진단시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3.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II(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마다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II(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4. 면허정지 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II(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5. 면허취소 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 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6.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7. 자동차보험료할증 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II(s070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책임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자동차보험료할증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II(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보험료 총당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보장보험료 :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특별약관(단, 특별약관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의 손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적립보험료 : 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에서 정한 대체납입을 목적으로 적립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관련보험료 :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로써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단, 최초계약시의 최초 보험료는 제외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추가보장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추가적립보험료 : 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에서 정한 대체납입을 목적으로 계약자가 적립기간 동안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⑤ 적립기간 : 이 특약이 부가된 날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적립순보험료 : 적립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 해당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납입 해당월 말일 기준의 제4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이하 「적립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 범위 내에서 보장보험료를 납입 해당월 다음달 10일 이내에 자동으로 대체납입합니다.

② 계약자가 자동차관련보험료를 납입 해당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납입 해당월 말일 기준의 적립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동차관련보험료를 납입 해당월 다음달 10일 이내에 자동으로 대체납입합니다.

③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보장보험료의 대체납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적립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즉시 대체하여 드립니다.

④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대체납입이 납입 해당월 말일 기준의 적립해약환급금의 부족으로 보장보험료 및 자동차관련보험료의 일부만 대체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순서에 의해 처리합니다.

1. 자동차관련보험료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이 빠른 순서대로 먼저 대체납입합니다)

2. 보장보험료

⑤ 위의 제1항에서 제4항에 의한 대체납입은 적립해약환급금이 제7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3조(적립금의 중도 인출)

계약자는 적립기간 개시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적립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당시 적립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6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4조(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회사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적립한 금액(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보험료로 대체납입된 경우 및 제3조(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따라 중도 인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 율
1년 미만	보험계약대출이율 - 4%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대출이율 - 3%
2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이율 - 2%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조(만기환급금)

① 회사는 적립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율-2%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제7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최초 가입시점에서 적용한 보통약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최초 가입시점에서 적용한 보통약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최초 가입시점에서 적용한 보통약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회사는 이 보험의 모든 보장계약(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을 말합니다)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1. 보험료 충당 특약 자동갱신 추가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

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약」이라 합니다)은 회사와 계약자 간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험료 충당 특별약관(이하 「보험료 충당특약」이라 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 충당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종전의 보험료 충당특약(이하 「갱신전 보험료 충당특약」이라 합니다) 만기일의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전 보험료 충당특약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갱신된 보험료 충당특약(이하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이라 합니다)의 적립기간은 갱신전 보험료 충당특약의 적립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적립기간으로 합니다.

③ 보험료 충당특약 제6조(환급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만기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자가 만기환급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만기환급금을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추가적립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료 충당특약의 적립기간 중에 보험료 충당특약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 정의한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어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충당특약을 갱신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갱신 보험료 충당특약 제1회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계약자가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료 충당특약을 해제합니다.

제4조(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가 갱신시점에서 보험료 충당특약의 내용(이율체계,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7. 보험료 충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의 특별약관 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합니다. 단, 특별약관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을 제외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장계약의 자동갱신)

① 보장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만기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계약(이하 「갱신전 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장계약(이하 「갱신보장계약」이라 합니다)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자동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②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요구와 회사의 승인에 의해 보험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제3항의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 제25조(계약후 알릴의무)를 적용합니다.

제3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가 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개정할 경우에는 갱신보장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갱신보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보장계약의 제1회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보장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갱신보장계약의 보장개시)

제2조(보장계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보장개시는 갱

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보장계약을 따릅니다.

9.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의 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가 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질병사망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제2조 (특약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질병사망(사망 또는 장애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인 후 유장해상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과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별표-질병8】**(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서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별표-질병8】**(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 1~39번)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 (**【별표-질병8】**(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 40~44번)
-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⑥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건강우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우대 적용되는 보험료는 질병사망 담보에 한합니다.
- ②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청약한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우량체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적격자(加入適格者)로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吸煙)」이라 합니다)하지 아니하고 건강상태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하 「우량체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감액)

계약자가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일부해지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우량체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 (해약환급금)

제4조(특별약관의 감액)에 따라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특별약관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제7조 (계약전 알릴 의무 및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비흡연 고지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별약관의 적용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표준체보험료」라 합니다)보다 적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이하 「우량체보

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과 관계없이 「우량체보험료」의 「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우량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은 장래에 향하여 해지됩니다. 단, 보험료 납입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우량체보험료」의 「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피보험자의 가입자격)에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및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2. 상해관련 특별약관」 및 「3. 질병관련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신체관련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④ 신체관련 보통약관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신체관련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신체관련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신체관련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부가된 상해관련 특별약관, 질병관련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II(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단,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1-1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단,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1-3.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장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 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분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 및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28조(보험약관 등의 교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 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 및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28조(보험약관 등의 교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1조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 등이 직접 서명날인(도장을 찍음)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을 받은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보험료가 이체된 날과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보장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6.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① 계약자와 동일한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3. 질병관련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3. 질병관련 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대해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사망보장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제2조(지급사유)

-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가 실시한 진단 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

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의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화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

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장 해 분 류 표

< 총 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液)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륜(%)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0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ㅋ, ㆁ)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text{cm}$ (1/2 크기는 40cm^2 ,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times 8\text{cm}$ (1/2 크기는 24cm^2 ,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text{cm}$ (1/2 크기는 12cm^2 ,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
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
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
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 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걸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뇌 · 내장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내장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상해名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1. 뇌손상	☐ 머리등근천장의 골절	S02.0
	☐ 머리바닥뼈의 골절	S02.1
	☐ 안와바닥의 골절	S02.3
	☐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S02.7
	☐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8
	☐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9
	☐ 미만성 뇌손상	S06.2
	☐ 경막위 출혈	S06.4
	☐ 외상성 경막밑 출혈	S06.5
	☐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S06.6
	☐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머리내 손상	S06.7
	☐ 기타 머리내 손상	S06.8
	☐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S06.9
	☐ 머리뼈의 압착손상	S07.1
	☐ 기타 머리부분의 압착손상	S07.8
	☐ 기타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 혈관의 손상	S09.0
	☐ 머리의 다발성 손상	S09.7

상해名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2. 내장손상	☐ 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	S26.0
	☐ 기타 심장의 손상	S26.8
	☐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S26.9
	☐ 기타 폐의 손상	S27.3
	☐ 기관지의 손상	S27.4
	☐ 가슴기관의 손상	S27.5
	☐ 가슴막의 손상	S27.6
	☐ 가슴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	S27.7
	☐ 기타 명시된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8
	☐ 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9
	☐ 가슴의 압착손상 및 가슴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 가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S35
	☐ 지라 손상	S36.0
	☐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S36.1
	☐ 췌장(이자)의 손상	S36.2
	☐ 위의 손상	S36.3
	☐ 작은창자의 손상	S36.4
	☐ 결장의 손상	S36.5
	☐ 직장의 손상	S36.6
	☐ 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	S36.7
	☐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6.8
	☐ 췌관(신장)의 손상	S37.0
	☐ 요관의 손상	S37.1
	☐ 방광의 손상	S37.2
	☐ 요도의 손상	S37.3
	☐ 난소의 손상	S37.4
	☐ 자궁관의 손상	S37.5
	☐ 자궁의 손상	S37.6
	☐ 다발성 골반 장기의 손상	S37.7
	☐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	S37.8
	☐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분의 압착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 골반 기관을 동반한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9.6

주) 1.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의 분류표에서 3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에 대해서는 3단위 항목표에 포함된 4단위 항목의 상병을 모두 보상하며, 4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는 그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상병만을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급별	지급금액	상 해 부 위
1급	200만원	-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척주체 분쇄성 골절 -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 골절 -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00만원	- 상박골 분쇄성 골절 -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 (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 과 요 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 슬관절 탈구 -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천장골간 관절 탈구 -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지급금액	상 해 부 위
3급	1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근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지급금액	상 해 부 위
4급	1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연골 완전 파열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Smith,수근관절면,요골원위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지급금액	상 해 부 위
6급	5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 (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지급금액	상 해 부 위
8급	1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 (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혜 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 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상 해 부 위
10급	1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1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1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비 고>

-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적용한다.
- 2급내지는 11급까지의 상해 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적용한다.
-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 보다 한급높이 적용하며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이 때 위 1,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 지급금액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합산액을 적용한다.

질병 고도장애 판정기준

1. 팔·다리의 절단장애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애

- (1)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3)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4)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5) 두 팔을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6) 두 팔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7)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8)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9) 두 다리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10)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척추의 기능장애

- (1) 척추의 병변으로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척추의 기능장애는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완전강직(척추가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이 있어야 하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의 완전강직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의 기능 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4. 뇌병변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경우
- (2)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경우
- (3) 아래 10.의 (3)뇌병변장애의 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5. 시각장애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청각장애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정신지체장애

- (1)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작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

8. 신장장애

-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9. 심장장애

-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아래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5점 만점)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만점)
 - (다) 검사소견(10점 만점)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만점)
 - (마) 입원병력(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바) 입원횟수(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사) 치료병력(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0.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애가 발생되어 아래의 장애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 하나의 장애로 봅니다.)

1. 뇌병변 장애가 팔·다리의 절단장애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애와 동반된 경우
2. 언어장애가 정신지체장애와 동반된 경우)

(1) 팔·다리의 절단장애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③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④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애

- ①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②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③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④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⑤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⑥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⑦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⑧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⑨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⑩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경우
 - ⑪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⑫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애

- 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②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경우
- ③ 아래 11.의 (3)뇌병변장애의 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4) 시각장애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경우
-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애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 ②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언어장애

- ①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② 말의 흐름이 97%이상 장애를 받는 말더듬
- ③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④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7) 정신지체장애

- 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

(8) 심장장애

- 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아래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5점 만점)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만점)
 - (다) 검사소견(10점 만점)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만점)
 - (마) 입원병력(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바) 입원횟수(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사) 치료병력(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1.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애가 발생되어 위 10.의 장애 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해당되고 아래의 장애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 하나의 장애로 봅니다.)

1. 뇌병변 장애가 팔·다리의 절단장애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애와 동반된 경우
2. 언어장애가 정신지체장애와 동반된 경우)

(1) 팔·다리의 절단장애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④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애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②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④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⑥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⑦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⑧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⑨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 ⑩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⑪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⑫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⑬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경우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애

- 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전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경우
- ②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③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아래 ④와 ⑤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④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경우
 - ⑤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시각장애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애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이하인 경우
- ③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언어장애

- ①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②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아동 41~96%, 성인 24~96%)
- ③ 자음정확도가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④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주) 각 장애의 장애상태, 세부 판정기준, 판정시기, 장애진단전문의 및 장애진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별표-질병2】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질병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질병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주)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질병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키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질병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D45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질병7】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	N39
2. 치질	I84
3.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셋길(누공)	K60
4.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농양)	K61
5. 항문 및 직장의 기타질환	K62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특정부위·질병 분류표

구 분	특 정 부 위 질 병
1	위.십이지장 또는 공장
2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3	직장 또는 항문
4	간장, 담낭 또는 담관
5	췌장
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7	코 (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8	인두 또는 후두
9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10	귀 (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12	신장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15	유방(유선 포함)
16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18	고환(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19	갑상선
20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1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22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23	천골부 또는 미골부(해당신경 포함)
24	좌견관절부
25	우견관절부
26	좌고관절부
27	우고관절부

구 분	특 정 부 위 질 병
28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30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32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3	서혜부(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에 생긴 경우에 한함)
34	식도
35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36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37	수골(手骨)
38	족골(足骨)
39	상·하악골(上·下顎骨)
40	암
41	담석증
42	요로결석증
43	연골증, 관절증, 관절염
44	척추질환

【별표-재물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 2003.5.29 개정 및 시행(법률 제 6891호) -

제8조(보험금액)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② 전항 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 2002.12.5 개정 및 시행(대통령령 제 17792호) -

제5조(보험금액)

-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재물1.1】에서 정하는 금액(최고 1,500만원).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재물1.2】에서 정하는 금액(최고 8,000만원)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 ⑤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1998.4.21 개정 및 시행(재경부령 제 16호) -

제2조(실손해액)

- ①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별표-재물1.1】

상해급별 보험금액표

급별	지 급 액	상 해 부 위
1급	1,500만원	1.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추체분쇄성골절 3.척추제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 4.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태 6.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경골하 3분의 1부 분쇄골절 9.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0.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급	800만원	1.상박골간부분쇄형골절 2.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두개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슬관절탈구 6.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천장골간 관절탈구 9.그 밖에 2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3 급	750만원	1.상박골경부골절 2.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골절상해 4.수근주상골골절 5.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대퇴골간부골절
3 급	750만원	7.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 급	700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 급	5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극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5 급	500만원	12. 2도 화상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 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종족골골절 5. 치골 · 좌골 · 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 (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 (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 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 급	250만원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 부골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 급	180만원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8 급	180만원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 급	140만원	1. 척추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 (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 (거골, 중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영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제간 관절부영좌와 주위연부조직 (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탈구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 급	120만원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영좌 5.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 · 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 급	100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 급	6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 급	4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급	20만원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게 보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등급보다 한급 낮게 보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표

등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 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급	7,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급	6,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4 급	5,600만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급	4,8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능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급	3,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급	3,200만원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 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 급	2,4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9 급	1,800만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 급	1,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급	1,500만원	7.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급	1,200만원	1.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 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10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 급	1,000만원	1.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7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 급	1,000만원	4.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 급	8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펴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급	5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 1.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내지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 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